

인도 식품수입 제도 주요내용

[작성처 : 방콕사무소]

□ 통관검사 절차

○ 항만보건소(PHO : Port Health Officer) 검사

-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PHO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됨.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중인 제품은 유료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검사는 제품 운송 시 보관의 상태(제품 특성에 따른 보관 요건 충족여부, 부패와 오염방지 여부확인)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팽창, 돌출 등 식품 변질여부를 가시적으로 판단하며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식품 손상을 확인) 등을 확인.

○ 샘플검사 절차

- (샘플검사)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되어,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 이중 부담.

(재심)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

-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 지정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 이 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 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

- (새로운 조정 절차) 2014년 식품안전기준청에 의해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함.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 됨.

□ 라벨링 규정

○ 라벨링 규정 변경

- 라벨에는 제조자의 이름, 주소, 포장업체, 수입자, 공급자, 함유량 순으로 주요 성분 표시, 순중량, 제조·포장의 월·년, 유통기한의 월·년 표시, 원산지, 제품번호, 시장가격(세금 포함), 사용 설명과 영양성분 표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합성 감미료(MSG) 포함여부는 반드시 라벨에 표시해야함
- 2013년 식품안전기준청이 발효한 라벨링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새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라벨링을 기존의 스티커가 아닌 패키징 표면에 인쇄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소수량(MOQ)을 맞추기 힘든 음료수 등 캔제품과 외국 맥주 등이 큰 피해를 입었음. 인도에 수출 코자 하는 업체들은 식품 라벨링 규정을 잘 숙지하여 대비 필요.

* 출처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홈페이지(www.fssai.gov.in/)

□ 현재 대 인도 생과일 수출은 검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수출이 어려움.

- 검역협상 체결 시, 딸기 등 유망과채류 수출 가능성 있음

* 현재 인도 수출 가능 신선과채류

국가	협상타결 품목 (수출 가능)	협상진행 품목 (수출 불가능)	비 고 (협상없이 수출 가능한 품목)
인도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 버섯류	검역본부 홈페이지 조건부 수입조건 참조